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7. 5. 22.

사회건설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- 가. 제출일자 : 2007년 5월 4일
- 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07년 5월 17일
- 라. 상정일자 : 제12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07년 5월 18일)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이 광 세)

가. 제 안 이 유

-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코자 함.

나. 주 요 내 용

-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제한장치 해제시에 제반비용을 납부하면 별도 해제요청 없이 비용납부 확인만으로 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.(안 제2조의 2 제2항)
- 수도권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보급중인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토록 규정 (안 [별표 1] 비고 제7호)
- 공영주차장의 급지조정 근거 신설 (안 [별표 1] 비고 제3호 사목)
- 1급 ~ 3급지 노상주차장에 대해 주차면수의 50% 이내 범위 내에서 1일 주차 및 월 정기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정 (안 [별표 1]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이 남 식)

-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

○ 안 제2조의 2에는

-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 때에 제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해제요청 절차없이 비용납부 확인 후 해제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,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폐지하였으며,

○ 안 별표1의 비고 제3호에는

-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,

○ 안 별표1의 비고 제7호에는

-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.

○ 안 별표1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개정한 것으로

-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면수의 50% 이하는 1일 주차 및 월 정기권을 이용한 요금체제로 개편.
- 1일 주차의 경우 1급지는 2만원, 2급지는 1만5천원, 3급지는 9천원, 4급지는 6천원, 5급지는 3천원으로,
- 월 정기권(주간)의 경우 1급지는 20만원, 2급지는 10만원, 3급지는 8만원으로 한 것으로 이는 주차장법 제9조 규정에 적합하고 아울러 주차장 이용자들의 선택폭을 넓혀 공주차율을 줄이고 운영의 합리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,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審査結果：原案可決

[별표 1]

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 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 - 1구획당)

구 분	노 상 주 차 장				노 외 주 차 장		
	1회 주차시 10분당	1일 주차권	월정기권		1회 주차시 10분당	월정기권	
			주간	야간		주간	야간
1급지	1,000	20,000	200,000	-	800	250,000	100,000
2급지	500	15,000	100,000	-	500	180,000	60,000
3급지	300	9,000	80,000	-	300	100,000	40,000
4급지	200	6,000	50,000	-	200	환승목적 주차시 40,000 기타 50,000	20,000
5급지	100	3,000	30,000	20,000	100	30,000	20,000

※ 노상주차장 1일 주차 및 월 정기권 발급은 주차면수의 50% 이하로 하며, 5급지 노상 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.

<비고>

-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.
-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,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유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.
-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- 1급지 : 경인로·선유로·노들길 및 여의도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접하고 있는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
 - 2급지 : 주거·상업·공업지역의 주차장(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)중 상업·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
 - 3급지 : 1·2·4·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
 - 4급지 : 지하철 환승주차장(지하철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)중 상업·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
 - 5급지 : (1)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 환승주차장
(2)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
(3)1·2·3·4급지 주차장 중 야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
-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%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.
-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.

4. 주간 및 야간의 시간 구분·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5. 삭제
6. 다음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. 다만,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이를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.
 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
 -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제4호·제6호·제10호·제12호·제14호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
 - 다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
7. 구청장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와 「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금지와 관계없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.
다만,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,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.
8. 주차요금의 할인·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
9. 구청장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
10. 삭제
11.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12.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(월·화·수·목·금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)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요금의 20%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. 다만,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13. 구청장은 주한외교관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5. 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□ 개정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코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제한장치 해제시에 제반비용을 납부하면 별도 해제요청 없이 비용납부 확인만으로 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. (안 제2조의2제2항)
- 수도권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보급중인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토록 규정 (안 [별표 1] 비고 제7호)
- 공영주차장의 급지조정 근거 신설 (안 [별표 1] 비고 제3호사목)
- 1급 ~ 3급지 노상주차장에 대해 주차면수의 50%이내 범위 내에서 1일 주차 및 월정기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정(안 [별표 1])

□ 참고사항

- 관련근거
 - 「주차장법」,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, 환경부고시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합의사항 : 필요없음
- 입법예고(2007.02.28.~ 2007.03.19.)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주차장법”을 “「주차장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의 2제2항 중 “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주차요금·가산금 및 해제 비용을 납부한 후 구청장에게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”를 “관리책임자가 해당 주차요금·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2조의2제4항 중 “제2항 및 제3항”을 “제2항”으로, 동항 후단을 삭제하며,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하는 경우 : 해제비용 미징수
2.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하는 경우 : 해제비용 3만원
징수 (사전고지 후 해제)

제3조제4호 중 “이용하고”를 “이용하여”로 하고, 동조제8호중 “도로교통법 시행령”을 “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중 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”로 한다.

제5조의2의 제목 중 “설치운영”을 “설치·운영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”을 “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8조”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기록관리”를 “기록·관리”로 한다.

제21조의 3제1항제3호 중 “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”을 “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동항제4호 중 “한국은행법”을 “「한국은행법」”으로 하며, 동조제2항제3호 중 “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”을 “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”로, 한다.

제22조제1항 및 제25조 중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”를 각각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」”로 한다.

조와 조 제목은 각각 붙여 쓰고,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각각 띄어 쓴다.

「별표 1(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)을 별지와 같이 한다.」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 - 1구획당)

구 분	노 상 주 차 장				노 외 주 차 장		
	1회 주차시 10분당	1일 주차권	월정기권		1회 주차시 10분당	월정기권	
			주간	야간		주간	야간
1급지	1,000	20,000	200,000	-	800	250,000	100,000
2급지	500	15,000	100,000	-	500	180,000	60,000
3급지	300	9,000	80,000	-	300	100,000	40,000
4급지	200	6,000	50,000	-	200	환승목적 주차시 40,000 기타 50,000	20,000
5급지	100	3,000	30,000	20,000	100	30,000	20,000

※ 노상주차장 1일 주차 및 월정기권 발급은 주차면수의 50% 이하로 하며, 5급지 노상 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이 주·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.

<비고>

-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.
-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,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정수한다.
-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- 1급지 : 경인로·선유로·노들길 및 여의도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접하고 있는 주차장 으로 써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
 - 2급지 : 주거·상업·공업지역의 주차장(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) 중 상업·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
 - 3급지 : 1·2·4·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
 - 4급지 : 지하철환승주차장(지하철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)중 상업·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
 - 5급지 : (1)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
(2)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
(3)1·2·3·4급지 주차장 중 야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
-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%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.
-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 할 수 있다.

4.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·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5. 삭제
6. 다음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. 다만,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이를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.
 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
 -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10호·제12호·제14호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
 - 다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
7. 구청장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와 「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급지와 관계없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.

다만,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,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.
8. 주차요금의 할인·할증 등에 따라 100원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
9. 구청장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
10. 삭제
11.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12.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(월·화·수·목·금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) 참여차량 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요금의 20%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. 다만,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13. 구청장은 주한외교관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<u>주차장법</u> (이하 "법"이라 한다), 동법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규칙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(목적) ----- 「 <u>주차장법</u> 」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의 2 (주차요금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당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<u>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주차요금·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후 구청장에게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.</u>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요청이 있으면 주차요금·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차량에 한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.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(이하 "해제비용"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. 1. 주차장 운영시간내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: <u>해제비용 미징수</u> 2.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: <u>해제비용 3만원 징수</u>	제2조의 2(주차요금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관리책임자가 당해 주차요금·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.</u> <삭제> ④ 제2항 ----- ----- ----- ----- . <후단 삭제> 1.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하는 경우 : <u>해제비용 미징수</u> 2.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하는 경우 : <u>해제비용 3만원 징수(사전고지 후 해제)</u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 (주차거부금지) (생략) 1. ~ 3. (생략) 4.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<u>이용하고</u>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5. ~ 7. (생략) 8.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<u>도로교통법 시행령</u>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	제3조(주차거부금지)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이용하여</u> ----- 5. ~ 7. (현행과 같음) 8.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「 <u>도로교통법 시행령</u> 」 -----
제4조 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<u>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</u> 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3. (생략) ② (생략)	제4조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「 <u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 」 제13조 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의2 (전용주차구획의 <u>설치운영</u>) ① ~ ③ (생략)	제5조의2(전용주차구획의 <u>설치·운영</u>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 (주차장의 표지) ①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<u>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</u> 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의한다. ② (생략) 1. ~ 5. (생략)	제10조(주차장의 표지) ① ----- ----- 「 <u>도로교통법시행규칙</u> 」 제8조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21조 (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) ① (생략)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,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<u>기록관리</u> 하여야 한다.	제21조(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록·관리</u> -----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의3 (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)	제21조의3(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토지가액은 <u>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법률</u>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<u>토지 가격비준표</u> 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.	3. ----- 「 <u>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</u> 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4.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(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)로 하되,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<u>한국은행법</u>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·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.	4. ----- ----- ----- ----- 「 <u>한국은행법</u> 」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토지가액은 <u>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법률</u>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.	3. ----- 「 <u>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</u> 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4. (생략)	4. (생략)

#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비고> 1. ~ 2. (생략) 3. (생략) 가. ~ 바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~ 5. (생략) 6. (생략) 가. <u>장애인복지법</u>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 나. <u>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</u>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10호·제12호·제14호와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다. <u>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</u>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7. 구청장은 <u>자동차관리법</u>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<u>경형자동차</u>에 대하여 주차 요금의 100분의50을 할인할 수 있다. 다만,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 목적으로 주차하는 <u>경형자동차</u>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,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.	<비고>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 사.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.~ 5. (현행과 같음) 6. (현행과 같음) 가. 「<u>장애인복지법</u>」 ----- ----- ----- 나. 「<u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. 「<u>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</u>」 ----- ----- ----- 7. ----- 「<u>자동차관리법</u>」 ----- ----- <u>경형자동차</u>와 「<u>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</u>」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<u>저공해자동차</u> ----- <u>경형자동차</u>와 <u>저공해자동차</u> ----- ----- -----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8.~ 11.(생략)	8.~ 11.(현행과 같음)
12. 구청장은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2·3·4·5급지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할인할 수 있다.	12.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 (월·화·수·목·금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)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요금의 20%를 할인해주어야 한다. 다만,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13. (생략)	13.(현행과 같음)